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7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21. 7. 22. (목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
담당과장	한상덕 과장(044-203-5860) 이원희 과장(044-203-5870)	담 당 자	조현진 사무관(044-203-5863) 박종희 사무관(044-203-5871)

중국,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

- 제413차 무역위원회, 향후 5년간 7.17~25.82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- 중국, 인니 및 대만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'21.7.22.(목)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여, **중국,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***(Flat-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)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.

○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**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**로, 자동차, 조선, 화학·플랜트, 항공, 전자·가전기기, 식기·주방용품 등 **기계부품**이나 **산업재, 다양한 소비재**의 **핵심소재**로 **사용**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**탄소중립·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·부·장** 산업으로서 **중요한 역할**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**'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**는 **약 3~4조원대**(약 200만톤대)에 달하고,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%대, 조사대상물품이 약 40%대(중국, 인니, 대만),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%미만을 차지하고 있다.

□ 지난 ’20.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,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‘21.2.18.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, 예비덤핑률은 중국 49.4%, 인도네시아 29.68%, 대만은 9.20~9.51%이었다.

□ ’21.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,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,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**7.22(목)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하였다.**

○ 첫째,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(WTO)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, 수입·수요자,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, 이해관계인 회의, 공청회,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중국,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**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** 판정하였다.

○ 둘째,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, 시장점유율 하락, 이윤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**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.**

○ 셋째, 무역위원회는 **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** 이윤감소 등 **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치는 등 **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**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.

○ 넷째, 무역위원회는 **덤핑률**과 **산업피해율을** 비교하여 둘 중 **낮은 수준***을 **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하였고, 이에 따라** 조사대상국 **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.17~25.82%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되었다.**

<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>

공급국	공급자	예비 덤핑률	최종 덤핑률	산업 피해율	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
중국	산시타이강	49.04%	23.69%	25.82%	23.69%
	리스코	49.04%	28.83%		25.82% (LDR* 적용)
	그 밖의 공급자	49.04%	24.83%		24.83%
인도네시아	인니청산	29.68%	29.68%		25.82% (LDR적용)
	그 밖의 공급자	29.68%	29.68%		25.82% (LDR적용)
대만	유스코	9.20%	9.47%		9.47%
	왈신	9.51%	7.17%		7.17%
	그 밖의 공급자	9.30%	9.07%		9.07%

* 최소부과원칙(Lesser Duty Rule)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中 낮은 것을 선택
↳(근거)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(관세법시행령 제65조)

□ 또한, **덤핑방지관세 부과시**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, **국내 중소 수입.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**를 중심으로 **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** 요구가 있었으며,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.

○ 첫째, **(부과제외)**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,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(낮은 니켈 함량) 등 **일부 품목에 대해 '관세부과 제외'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**하였다.

* (부과제외 세부품목) ①200계(니켈함량 6% 미만) 제품, ②열연 폭 2,000㎜ 이상의 제품, 일부 열연 316, 316L 강종, 일부 STS 420 강종, 일부 인·황·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

○ 둘째, **(가격약속)** 수출자가 **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**하여 수출하겠다는 **'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'에 대해, 산업보호,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**하였다.

- 중국 산시타이강, 리스코, 인도네시아 인니청산, 대만 유스코,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**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**하고, 수출가격 인상으로 **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**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다.

* (가격인상약속제도)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(WTO반덤핑협정 제8조, 관세법 제54조)

-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**5개 수출자**는 **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** 동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.

□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**기획재정부장관**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('20.9.25.)부터 **12개월 이내**에 **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**하며, **고시**(관보게재)를 통해 **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**하게 된다.

【참고】 1. 중국, 인니,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개요
2.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조현진 사무관(044-203-5863), 덤핑조사과 박종희 사무관(044-203-58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중국, 인니,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(주)포스코 ('20.7.20.접수)

○ 조사대상공급자 :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, 인니 청산, 대만 유스코 및 왈신

□ 조사대상물품

○ 품명 :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(Flat-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)

* 두께가 8㎜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을 제외함

○ 용도 : 자동차, 조선, 플랜트, 전자·가전·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, 건축내외장재, 식기·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됨

○ 분류(HSK): 7219.12.1010, 7219.12.1090, 7219.12.9000 등 48개

□ 국내시장규모('19년): 약 3~4조원대(약 200만톤대 내외)

○ 국내생산물품 약 40%대, 조사대상물품 등 수입물품 약 50%대 점유

□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

공급국	공급자	예비 덤핑률	최종 덤핑률	산업 피해율	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
중국	산시타이강	49.04%	23.69%	25.82%	23.69%
	리스코	49.04%	28.83%		25.82% (LDR*적용)
	그 밖의 공급자	49.04%	24.83%		24.83%
인도네시아	인니청산	29.68%	29.68%		25.82% (LDR적용)
	그 밖의 공급자	29.68%	29.68%		25.82% (LDR적용)
대만	유스코	9.20%	9.47%		9.47%
	왈신	9.51%	7.17%		7.17%
	그 밖의 공급자	9.30%	9.07%		9.07%

* 최소부과원칙(Lesser Duty Rule)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中 낮은 것을 선택

↳(근거)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(관세법시행령 제65조)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개시 결정('20.9.25.) → 이해관계인회의 (1차 '21.1.5., 2차 '21.1.26.)

○ 무역위 예비판정 ('21.2.18.)

○ 국내외 현지실사('21.4~5월), 공청회('21.5.20.)

○ 무역위 최종판정('21.7.22)

참고 2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
